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 추행 등 목적 약취·약취 등

-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 10년 이하
-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3)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제288조 제2항)
: 2년 이상 10년 이하
- 4)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 피약취·유인된 자 국외이송죄(제288조 제3항)
: 2년 이상 10년 이하

2. 인신매매죄

- 1) 사람을 매매한 죄(인신매매죄) (제289조 제1항) : 7년 이하
- 2)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사람을 매매한 죄(제288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 3) 노동력착취 · 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 **목적** 사람을 매매한 죄(제289조 제3항)
: 2년 이상 10년 이하
- 4) 국외이송 **목적** 사람매매죄 + 매매된 자 국외이송죄(제289조 제4항)
: 2년 이상 10년 이하

3. 기타

- 1)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제290조)
- 2)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해·치사죄(제291조)
- 3)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1항)
- 4)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죄(제292조 제2항)
- 5) 미수범(제294조)

6) 형의 감경(제295조의2)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7) 예비, 음모(예비, 음모)

8) 세계주의(제296조의2)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1. 강간죄(제297조)
 2. 유사강간죄(제297조의 2)
 3. 강제추행죄(제298조)
 4.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제299조)
 5. 미수범(제300조)
 6. 강간등 상해죄·치상죄(제301조)
 7. 강간등 살인죄·치사죄(제301조의2)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죄(제302조)
 9.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제1항)
 10. 피구금자간음죄(제303조 제2항)
 11. ~~혼인방자간음죄(제304조)~~ (삭제: 2012.12.18. 위헌결정)
 12.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제305조)
 13. 상습범(제305조의2)
 14. 예비·음모죄(제305조의3)
- 1) 규정 ○ : 강간죄(제297조), 유사강간죄(제297조의 2), 준강간죄(제299조), 강간등 상해죄(제301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제305조)
 - 2) 규정 X :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제추행죄(제299조), 강간 등치상죄(제301조), 강간등 살인죄치사죄(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 제1항)

【성폭력특별법상 성범죄】

1. 주거침입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결정, 2021헌가9, 2023.2.23.).

2. 특수강간죄(제4조 제1항)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4.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등(제6조)

5.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제10조)

6. 공중 밀집 장소에 예서의 추행죄(제11조)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 제1항)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카메라이용 촬영물·복제물 반포등 죄(제14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카메라이용 촬영물·복제물 소지등 죄(제14조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